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

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 윤재갑·김민철·서삼석

김윤덕 • 이상직 • 홍문표

어기구・소병철・위성곤

이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,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,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,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,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,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(안 제 87조의2 신설).
- 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함(안 제87조의3 신설).
- 다. 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87조의4 신설).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2. "수산부산물"이란 수산물의 포획·채취·양식·가공·판매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을 말한다.
- 4의3. "수산부산물 재활용"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, 비료, 사료와 그 원료 등으로 제조·가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4의4. "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"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9장의2(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4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장의2 수산부산물

제87조의2(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 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·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
- 3.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7조의3(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 - 1.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
 - 2. 연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실적
 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,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7조의4(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(이하 "재활용센터"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해당 지역에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87조의3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수산부산물 배출 수요에 맞게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지사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의2. "수산부산물"이란 수산물
	의 포획·채취·양식·가공·판매
	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
	물건을 말한다.
<u> <신 설></u>	4의3. "수산부산물 재활용"이란
	수산부산물을 식품, 비료, 사
	료와 그 원료 등으로 제조·
	가공하는 것을 말한다.
<u> <신 설></u>	4의4. "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"
	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
	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
	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	<u>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</u>
	<u>한다.</u>
5. ~ 20. (생 략)	5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9장의2 수산부산물
<u><신 설></u>	제87조의2(수산부산물 재활용 기
	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
	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
	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

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 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

 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

 방향
- 2.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·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및 보급
- 3.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 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 항
- 4.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 행계획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

<신 설>

<신 설>

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87조의3(수산부산물 재활용 통 계조사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·도지사(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
- 2. 연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실적
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이를 종 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,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7조의4(수산부산물 재활용센 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

- 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(이하 "재활용센터"라 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해당 지 역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87조의3 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 계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수산부산물 배출 수요에 맞 게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 설 치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지사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설 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